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2021. 2. 24.



차 례

I. 현황 및 조치상황	1
II. 문제점 및 한계	3
III. 방향 및 전략	4
IV. 세부 계획	4
1.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4
2. 제재 강화 등 예방과 제도 보완	6
3.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제고	9

I. 현황 및 조치상황

- **(발단 및 경과)**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 당사자에 대한 처벌 요구와 함께 **체육 현장에서 성적지상주의와 인권경시 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 유명 스포츠 선수가 학생(선수)들의 롤모델이 되는 등 큰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제재 여론 크게 확산

-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소속 팀, 단체별 출전 정지,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 사례 폭로가 잇따르며, 스포츠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전력에 대한 처리방향 제시 및 향후 체육 현장에서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긴급요

- **(그간의 조치)** '19년 병상계 성폭행, '20년 철인3종 인권침해 등 체육계 중대 비리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

※ ▲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대책('19.1.25) ▲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20.8.28) ▲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20.12.11) 既 발표

- '19년 성적지상주의 중심 스포츠 기본틀 변화를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총 7차례 권고** 제시

* ▲1차 스포츠 인권기구 설립 ▲2차 학교스포츠 정상화 ▲3차 모두를 위한 스포츠 ▲4차 스포츠기본법 제정 ▲5차 스포츠클럽 활성화 ▲6차 전문체육 시스템 개선 ▲7차 체육단체 선진화

- '20년 **스포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총 4차례 법률 개정**(국민체육진흥법 3회, 학교체육진흥법) 및 **'21년 본격 시행**

< 스포츠 인권보호 법 개정 주요 내용 >

- **국민체육진흥법** :
 (1차개정)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제한 강화 등('20.8.5 시행)
 (2차개정)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21.2.19 시행)
 (3차개정)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보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공표 등('21.6.9 시행)
- **학교체육진흥법** : CCTV 설치, 학기별 인권교육 의무화, 피해자 심리치료 등('21.4.21 시행)

-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신고접수, 상담, 조사 등)인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8.5)

* 스포츠윤리센터 실적(~'21.2.22) : 상담 397건, 신고 123건, 처리 23건

- **(학교폭력 실태 파악)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20.7~8월 / 교육부)** 결과, 전체 학생선수(59,401명) 중 **680명(1.2%)이 피해 경험**
-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그 중 **310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

< 2020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조치 현황 >

구분	체육지도자(77명)				학생	합계
	학교 안(61명)		학교 밖(16명)			
	해임	징정계	형의 없음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전담(심의)기구 조치	
사례수(명)	5	9	33	14	16	233

학생선수 등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결과

- **학생선수 (성)폭력 등 실태조사('19.11 발표) (*인권위)**

- (조사 개요) 전국 초중고 선수 63,211명 조사, 총 57,557명 응답
- (조사 결과) **언어폭력 15.7%, 신체폭력 14.7%, 성폭력 3.8%** 경험

- **선수 및 지도자 인권침해 긴급 실태조사('21.2.22~23) (*문체부)**

- (조사 개요) 전국 3만여명 선수·지도자 조사, 선수(926명), 지도자(1,157명) 응답
- (조사 결과) 만 14세 이상 **학생선수** 최근 3년간 **폭력경험 : 언어폭력 9.6%, 신체폭력 7.6%**
 *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선수의 가해자 유형 : 지도자 68.3%, 선배선수 50.9%, 동료선수 13.0% 등

- 과거 대비 **인권침해가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비율 : **선수 71.4%, 지도자 89.7%**
 * 선수 구분별 인권침해 '감소' 응답 비중 : 학생선수(14세 이상) 68.4%, 대학 71.8%, 실업팀 76.6%, 프로 79.5%
 * 선수의 감소 원인 인식 : 체육인 인권의식 향상 64.3%, 국민 인권의식 향상 43.6%, 신고문화 확대 37.1% 등

- ☞ **인권위 조사결과에 비해 폭력경험 비율 감소하고 과거 대비 인권침해 감소 인식도 긍정적이나, 선수와 지도자간 인권침해 감소에 대한 인식차** 有

II. 문제점 및 한계

- **(성적지상주의 문화의 폐해)** 학교운동부, 실업팀 등 지도자는 실적 중심 평가(성적, 진학 등)를 받고 있어, 성적을 위해 폭력 등 인권 침해 용인·정당화 경향 여전
 - 선수의 경우도 상급학교 진학, 실력 향상 등을 위해 인권침해 감수 또는 내면화
 - * 학생선수의 신체폭력 경험 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비율 : 초등학생 38.7%, 중학생 21.4% (인권위 학생선수 실태조사, '19.11)
 - 경기실적 중심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로 인해 팀 내 실력있는 선수에게 권한과 지원이 집중되어, 선수간 서열화 및 왜곡된 관계(폭력, 따돌림 등) 조장
- **(폭력에 순응하게 하는 폐쇄적 구조)** 운동부 지도자, 동료 선수들과 합숙, 훈련 등 계속 같이 생활하고, 진학·취업(실업팀 등)을 위해 선후배 관계가 중요한 폐쇄적 구조로 폭력에 소극적 대처
 - * 신체폭력 피해시 중학생 78.6%, 고등학생 80.8%가 소극적으로 대처(그냥 넘어감, 소심한 불만표시 등)(인권위 학생선수 실태조사, '19.11)
- **(엄중한 책임부과 미흡)** 학교폭력에도 향후 선수활동에 지장이 없는 미온적 처벌로 인해 재발 방지 및 예방효과 미약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생선수에 대한 조치(사과, 봉사, 전학 등)는 대회 참가 제한 등 선수생활에 대한 제재와 연계 미비
 - *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종목단체에 통보되지 않음
 - 과거에 있었던 폭력행위의 시효* 완료 등으로 조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거나, 스포츠 선수의 중대한 학교폭력 이력이 드러나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미비
 - * 대한체육회 징계시효 최대 5년, 폭행 공소시효 5~10년

III. 방향 및 전략

방향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 제시 촉촉한 학교체육 폭력 거름망 구축과 근본적 인식 개선	
전략	(과거) 유사 사건에, 피해자 중심 처리 체계 구축	추진 과제
	(현재) 체육 현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예방 및 제도 보완	
	(미래) 폭력을 배제한, 성적 중심의 체육계 문화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원 ② 과거사례 적극 대응 ③ 과거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④ 징계정보 통합관리 확대 ⑤ 선수 선발시 폭력이력 확인, 제한 강화 ⑥ 단체별 제재규정 점검 및 정비 ⑦ 학교현장 폭력실태 확인·점검 강화 ⑧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⑨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 ⑩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⑪ 학교 현장의 인권의식 개선 ⑫ 과학적 훈련방식 확산

IV. 세부 계획

1 [기 발생사건 처리]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동의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

□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원

- **(피해자 상담)**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상담(심리, 법률 등) 지원 [피해자가 성인: 스포츠윤리센터, 학생: 교육부]
- **(진정한 사과를 통한 치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학폭 치유 및 회복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유도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가 성인: 스포츠윤리센터, 학생: 교육부]
 - * 20년 지나도 생생한 그때의 고통... “진정한 사과 받고 싶어” (서울신문, '21.2.16)

□ 과거사례 적극 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선수(프로, 실업, 국가대표 등)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3월~4월, 2달간) [스포츠윤리센터]
 - * 전담신고창구 설치(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전화) 및 홍보
- **(모니터링 강화)** 포털, 네이트판 등 모니터링 강화, 체육계 학폭 폭로 발생시 폭로자 접촉을 통한 신고 접수 [스포츠윤리센터]
 - * 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한 직권조사 착수

□ 과거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기준 마련)**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에 대해 제반 상황*과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영구 퇴출, 출장정지 등 구단, 협회 등의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문체부]
 - * 피해자 용서 여부, 죄질, 과거 학폭징계 여부 등
- 적절한 제재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문체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프로단체, 시민단체 등) 구성·운영

【 現 제재 기준(예시) 】

- **프로스포츠** : 포괄적 상벌규정*에 따라 출장 정지 등 제재 조치
 - * 예시) 범죄 등으로 물의 야기시 2~20경기 출장 정지(K리그),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품위 손상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남자골프 등)
- **국가대표** :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등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무기한 국가대표 선발 제한
- **실업팀** :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해임 등 징계 조치(팀별 운영규정)

- **(조사 및 제재)** 신고 사건 조사,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 종목별 단체에 제재 요구 [스포츠윤리센터]
 - 사건 처리기간(최대 120일) 준수 및 신고자에 처리 진행상황 중간 알림 확대(現 : 처리기간 연장시 통보 → 개선 : 수시 통보)
 - * 현재 사건 처리기간 90일+30일(1회 연장가능)

2

[재발 방지] 제재 강화 등 예방과 제도 보완

◇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으로, 실질적 폭력 예방 효과 강화

□ 징계 정보 통합관리 확대

- **(징계정보 통합관리)** 통합징계정보 시스템 구축(~'22년)에 따라, 학교 운동부 내 학생선수 징계정보 통합관리 추진 [스포츠윤리센터]
 -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별 징계이력 통합(~'21년), 학교운동부 징계이력 통합(~'22년)
 - 통합관리 대상 징계정보의 범위*는 관계 기관 협의체(문체부, 교육부, 스포츠윤리센터, 학교 등)를 통해 협의해 결정
 - *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을 징계정보에 포함
- **(스포츠윤리센터 연계 확대)** 학생선수 관련 신고 정보를 학교와 스포츠윤리센터간 공유 방안* 추진 [교육부, 스포츠윤리센터]
 - * 학교에 운동부 내 폭력 신고가 접수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신고자에 고지 등

□ 선수 선발 등 과정에서 폭력 이력 확인 및 제한 강화

- **(프로스포츠)** 신인 프로선수 선발시 서약서 징구(거짓 작성시 제재), 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점검 [프로스포츠단체]
- **(국가대표)** 학교폭력 징계시 국가대표 선발 제한 [대한체육회]
 - * 종목단체에서 국가대표 선발시 징계이력 확인 및 학폭위 심의이력 제출 요구
- **(실업팀)** 신인선수 선발시 학폭 이력 확인·반영(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 권고 [문체부]
- **(대학)** 대입 특기자전형시 고등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 [교육부]
 - 대학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사항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시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 **(선수등록·대회참가) 가해학생 조치결과* 사전확인을 통한 선수 등록·대회참가 제한** [대한체육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사항 내역

- **선수등록 배제** : 학생선수 등록(매년 갱신)시 학생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고등학생에 한정*) 선수등록 제한**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인 학생은 퇴학 불가

- **경기대회 참가 제한** : **종목별·종합대회 주최·주관처에서 참가 선수의 학폭 이력을 확인하여 대회참가 제한**

* 대회참가 신청서 제출시 학생부상 학교폭력 기록 학교장(학생선수와 경쟁하는 동일연령대 非재학 선수의 경우 최종 재적학교 학교장) 확인서 첨부

【 학교폭력예방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안) 】

- 3개월 :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 6개월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12개월 : 8호(전학)
- 영구 : 9호(퇴학) * 퇴학시 선수자격 박탈

※ 가해학생 조치 병과시 중한 조치 적용, ※ '21년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시인부터 적용

□ **단체별 제재규정 점검 및 정비**

○ **(프로스포츠) 각 연맹의 포괄적 상벌규정 상 징계 사유에 학교 폭력을 예시로 명기*** [프로스포츠단체]

* 규정 상 징계 사유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학교폭력, 인권침해,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가대표) 대한체육회·종목단체별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점검하여 학교폭력, 인권침해시 선발제한 근거 명시** [대한체육회]

* 국가대표 영구제명 요건 단축(폭력으로 인한 3년 이상 출전정지 → 1년 이상 출전정지), 학교폭력, 인권침해,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가 등

○ **(실업팀) 실업팀별 운영규정 제정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이 드러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 [문체부]

*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21.6.9 시행)으로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 및 지자체 보고 의무 부과

□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 확인·점검 강화**

○ **(전수조사)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7월) [교육부]

* 학생선수 개인별 조사로 가·피해자 특정 및 피해 확인시 조치 연계

○ **(현장 감시 강화) 학교현장 인권감시관(불시점검, 상담) 운영**(4월~), **지역사무소·학교운동부 연계 체계 구축**(하반기) [스포츠윤리센터]

- 학교체육시설 **CCTV 설치 확대**(개정 학교체육진흥법 '21.4.21 시행) [교육부]

□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출전 지원)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 (탈퇴, 전학 등), 소속팀이 없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출전 지원** [대한체육회]

○ **(임시 보호) 지속적 피해(합숙 등) 우려시 피해학생(現 운동부) 대상 긴급 임시보호(숙식 등) 지원** [스포츠윤리센터]

* 상담, 신고, 조사과정에서 공간 분리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 가족, 주변인 및 조력인에게 임시거소(숙박시설 등) 비용 지원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

○ **(인력·조직 확대) 일선 학교운동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윤리센터 인력 확충**('21년 +13명) 및 **지역사무소 설치**('21년 3개소) [스포츠윤리센터]

- 전문수사기관(검·경 등) 인력 파견, 스포츠 특사경 도입 추진

○ **(신고 편의성 제고) SNS(카카오톡 등) 활용 간편 신고체계 구축** ('21년) [스포츠윤리센터]

◇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 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및 과학적 훈련방법 지원 확대

□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 **(평가체계 개선)** 팀 성적을 위해 실력있는 선수에 지원을 집중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개인별 평가가 가능한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 지표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21년) [문체부, 교육부]

* 축구의 경우 개인별 경기력 평가지표를 개발 중이며, 팀 실적증명서 대신 개인별 실적증명서 발급 추진('21년 : 고등리그, '23년 ~ : 전체 대회)

* 대입 체육특기자 경기실적증명서 반영비율은 평균 약 57%(일괄전형 기준)('20년)

- **체육지도자 채용·평가시 성적**(대회 성적, 상급학교 진학 등) **외 요소 반영 확대** [문체부, 교육부]

【 평가 요소(예시) 】

- **학교운동부 지도자** : 인권침해로 인한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21.4.21)
- **실업팀 지도자** : 지도능력, 선수간 의사소통 정도, 팀발전 기여도 등
 - * 실업팀 운영개선 연구용역(~'21.1/4분기)

- **(운동과 학습 병행 환경 조성)** 현재 축구, 야구, 농구 종목에서 실시중인 **유·청소년 주말리그***를 **他 종목까지 확대** [문체부]

* 축구 749개팀, 야구 81개팀, 농구 118개팀 리그 참가('20년)

- 수요조사(3월) 및 공모를 거쳐, **종목별 실정에 맞는 리그 개최·지원체계 구축**

- 종목단체별 **주중 개최 대회도 주말로 점진적 전환**(종목단체 신청시 보조금 지원, '21년 19억원)

-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시 성적 등 운동 외 요소 반영 확대*** 및 대회 참가, 특기자전형 등에서 **최저학력기준 반영 확대**** [교육부]

* 현행 30% 내외의 학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참가가 제한되도록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추진(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21.2.19.)

□ 학교 현장의 인권의식 개선

- **(상시합숙 근절)** 초등학교 운동부 기숙사 폐지('19) 연계, 향후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도 감축 유도,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추진** [교육부]

*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 현황 : ('19) 64개 → ('20) 22개

※ 고등학교는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해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제한적으로 운영 ('20년 174개교)하되, 연1회 이상 현장점검

- **(인권교육 강화)**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 대상 **학기별 1회 스포츠 인권교육 의무 실시** [교육부]

- 선수·지도자·학부모 등 **의무적 인권교육 시간 확대**(~'21년)*, **체육지도자 인권 보수교육**(2년 주기, 미이수시 제재/'21.6.9~)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콘텐츠 개발(총 16종)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 선수·지도자·체육단체 임직원 등 : 1시간→3시간, 학부모 : 1시간(신규)

- **프로구단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필요성, 제재 등) **교육 실시** [프로스포츠단체]

□ 과학적 훈련방식 확산

- **(스포츠과학지원 확대)** 인권침해가 아닌, **과학적 훈련방식 도입을** 통해 경기력을 개선하도록 **지원** [문체부]

-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11개소)를 통해, **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 운동부까지 지원**하고, 센터간 지원 사례 공유를 통해 **우수 훈련사례 확산**

-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기준에 훈련의 선진화·과학화 등 요소를 추가**(관련 연구용역 중, ~'21.上)하여 과학적 훈련 확산 유도

-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국가대표 훈련 콘텐츠를 학교까지 확산**

* 가상현실을 이용한 종목 체험 콘텐츠를 제작해 종목 선택 등 활용('21년 100억)